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48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성

담당변호사 소혜림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진

변론 종결 2020. 9. 11.

판결 선고 2020.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2) 피고는 1989. 5. 25. C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9. 18.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09. 3. 11.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C를 상대로 201,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1535), 그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9. 3. 11. D와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사이드에어백, 램프, 필라류 및 lower cover 등의 자동차 사출부품을 납품받아 왔다. D에서 납품받는 부품 중 A, B필러류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E회사가 독점 수입하여 공급하는 DEXFLEX 756-67을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었고, 쌍방향으로 위 원재료 단가를 2009, 2010, 2011년에는 kg당 5,500원, 2012, 2013년에는 kg당 6,400원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D와 C는 2009년 거래 초기부터 F(G회사)로부터 반값도 안 되는 유사원료를 구입하여 필라류 부품을 생산, 납품하고, 마치 지정된 정상 원재료를 사용해서 생산한 정상제품인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부품가격을 수령해갔다. 원고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D와 C가 원고를 속여 사용한 유사원재료의 구입처, 사용량, 단가 등을 조사해 보게 되었는데, D와 C가 부당 수령해간 금액은 2009년 173,608,126원, 2010년 298,192,787원, 2011년 286,904,709원, 2012년 277,496,666원, 2013년 86,232,515원 등 합계 1,122,434,803원 상당이

다. D와 C는 위와 같이 원고를 속여 부당히 수령해 간 위 1,122,434,803원 상당액에 대하여 불법 행위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D은 유사원료를 사용한 부품을 납품하고도 정상제품 가격을 수령해 감으

로써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D에 지급한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 무가 있다.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우선 201,000,000원만을 구한다.

2) 위 법원은 2017. 2. 10. 'D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D와 C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7나13562), D와 C가 2회 불출석하여 2018. 8. 25. 항소취하간주 되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부동산 매수 등

1) 천안시 서북구 H 대 237㎡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I와 J가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24,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K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다.

2) 위 근저당권은 2014. 3. 14.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L조합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3) 피고는 2014. 6. 17. J, I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3. 6.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5) M, N은 2019.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2, 3,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C는 2014. 3.경 J, I와 이 사건 부동산을 7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C는 회사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C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피고와 합의하고, 매도인들로부터 양해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다만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던 매도인들과 신탁자인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여전히 유효하므로,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J, I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2019. 6. 18. M,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이에 따라 J, I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처분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C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무자력인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의 일부인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수한 것이다.

3. 판단

원고가 피대위채권으로 주장하는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어 있어야하므로 먼저 C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5항은 '매매대금 730,000,000원에서 융자 200,000,000원, 현재보증금 263,000,000원, 기지급액 201,500,000원을 제외하면 잔금 65,500,000원이 남는 데 공실부분을 매도인이 임대하고 매도인이 가져가는 조건임(O호 45,000,000원, P호 5,000,000원, Q호 3,000,000원). 매수인은 잔금 65,500,000원에서 현재 공실금액 53,000,000원을 제외하고 12,5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 2014.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L조합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J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점,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3. 12. 23. 50,000,000원, 2014. 6. 16. 100,000,000원, 2014. 6. 17. 51,5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J, I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보원, 판사 고지은, 판사 김한울